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83

발의연월일: 2020. 11. 12.

발 의 자 : 이 영・김도읍・김상훈

김승수 · 김예지 · 신원식

양금희・이 용・조수진

한무경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집합투자기구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투자회사 외에 투자신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의무에 관해서는 투자회사에 한정하여 부과하고 있음.

집합투자기구의 대부분이 투자신탁의 형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의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의무가 부재함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저해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투자신탁의 경우에도 집합투자기구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집합투자기구의 운영을 효 율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4조제6항 신 설, 제182조제2항제1호라목, 제184조제7항·제8항, 제240조제7항제4호, 제249조의6제1항제1호라목 및 제254조제1항).

법률 제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2조제2항제1호라목 중 "투자회사인"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으로,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184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 야 한다.
- 1.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 2. 투자신탁재산의 계산
- 3.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의한 통지
- 4. 수익자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 5. 그 밖에 투자신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99조제1항 중 "제184조제6항"을 "제184조제7항"으로 한다.

제240조제7항제4호 중 "제184조제6항"을 "제184조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투자회사로부터"를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부터"로 한다.

제249조의6제1항제1호라목 중 "투자회사인"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인"으로,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을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한다.

제254조제1항 중 "제184조제6항"을 "제184조제6항 또는 제7항"으로, "투자회사"를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 "같은 조 제6항 각 호"를 "같은 조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투자신탁의 업무 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8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설정되는 투자신탁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	1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투자회사인</u> 경우 그 <u>투자</u>	라.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	<u>인투자신탁 또</u>
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	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
사무관리회사(제254조에	<u> 조제6항 또는 제7항</u>
따른 일반사무관리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	제184조(집합투자기구의 업무수
행 등) ① ~ ⑤ (생 략)	행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
	탁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2. 투자신탁재산의 계산
	3.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 의한

⑥·⑦ (생 략)

제199조(감독이사) ① 감독이사는 | 저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 며, 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 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그 투자 회사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 탁업자, 그 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 개업자 또는 그 투자회사로부 터 제184조제6항의 업무를 위 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 하여 그 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를 요구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통지

- 4. 수익자총회의 소집·개최·의 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
- 5. 그 밖에 투자신탁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 무
- ⑦·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 리 기 () \

과 살음)
데199조(감독이사) ①
제184조제7항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 제240조(집합투자재산의 회계처 리 등) ① ~ ⑥ (생 략) 리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 ⑦ 회계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의 회계장 부 등 관계 자료의 열람·복사 를 요청하거나 회계감사에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 또는 요구 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제184조제6항에 따라 해당 투자회사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또는 제238조제8항에 따라 투자신 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으로부터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
- ⑧ ~ ⑩ (생 략)
- 제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 제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①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
 구인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투자회사등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문투자형 사

⑦
<u>.</u>
1. ~ 3. (현행과 같음)
4. 제184조제6항 또는 제7항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부
<u>터</u>
⑧ ~ ⑩ (현행과 같음)
]249조의6(전문투자형 사모집합
투자기구의 설정·설립 및 보고)
①

모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하 여야 한다.

-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가. ~ 다. (생 략)
 - 라. 투자회사인 경우 그 투자
 회사로부터 제184조제6항
 의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
 사무관리회사
- 2. ~ 4. (생 략)
- ② ~ ⑤ (생 략)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제 저 184조제6항에 따라 투자회사의 위탁을 받아 <u>같은 조 제6항 각</u> 호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⑨ (생 략)

<u>.</u>
1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u>인</u> 투자신탁 또
는 투자회사로부터 제184
조제6항 또는 제7항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u>제</u>
<u>184조제6항 또는 제7항</u>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
같은 조 제6항 각 호
또는 제7항 각 호
② ~ ③ (현해과 가스)